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

흡연·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스티커 등 부착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자료 : 보건복지부〉

1.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나.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

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차.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2. 금연 및 흡연 구역 지정방법

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며

나. 다음 각호의 구역은 반드시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1)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

·영안실 등 보조시설은 제외

3)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보조시설 등은 제외

4)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철도의 차량내부·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3. 표시 및 시설기준

가. 표시기준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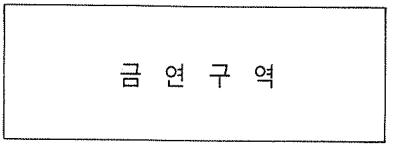

(예시)

〈스 티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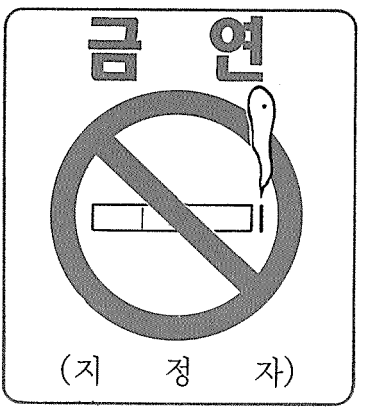

(예시)

나)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 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삽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시 판〉

흡 연 구 역

(예시)

나)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수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장소를 지정하고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아니하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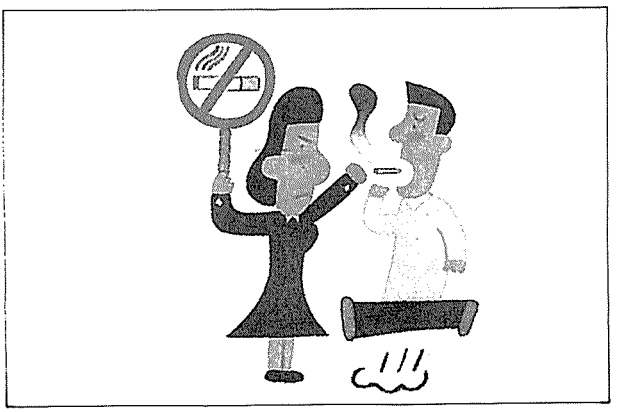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

흡연 혹은 금연 구역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금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하며, 표시판은 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99

4. 행정사항

가. 행정조치

1)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95. 12. 31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동 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내에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을 권장하도록 지도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용 건축물 또는 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지정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권자별로 점유구역이나 관리구역 또는 건물 전체를 1개 통합구역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도

4)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전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별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5) 특히, 당해시설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지정은 법령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홍보물의 제작·배포 또는 방문시 충분하게 지도될 수 있도록 배려

나. 시행일 : '96. 1. 1('95. 12. 31까지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령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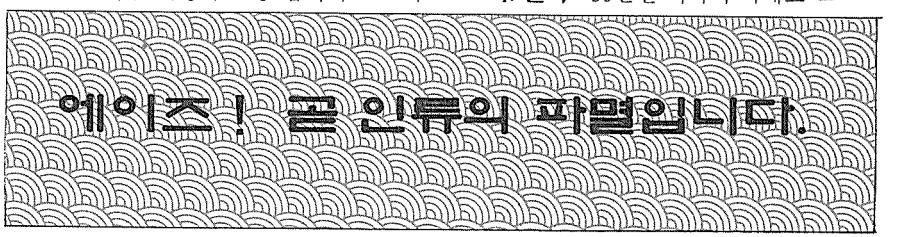
다. 벌칙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